업용, 법인 신·증설로 인한 중과세에 해당여부, 비과세·감면대상 재산에 대하여는 유예기간내에 사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

아울러 세무조사시 서류의 제출요구는 법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법 인의 관련 서류를 확보한 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 료제출의 요구는 지양하고 법인현황, 재산현황 등 사실관계의 확인위주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또한 세무조사의 강화와 더불어 토지의 소유자 변동사항, 지목 변경사항, 비과세·감 면분 변동사항, 과세누락 토지여부 대사 등과 건축물의 소유자 변동사항, 구조·용도 등실태, 무허가 신·증·개축, 고급주택 등 중과세 대상 재산실태, 화재위험 건축물 사용실태, 비과세·감면, 과세누락된 건축물 조사 및 차량, 건설기계, 선박, 항공기, 회원권, 시설물 등 소유자 변동사항, 과세누락, 구조변경 등을 일제조사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.

마. 지방세 감면규정 적용 철저 및 사후관리

금년도에는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의 개정으로 감면률과 감면대상 등이 대폭적으로 축소 조정되어 철저한 적용이 필요하므로 각 시도에서는 중앙단위의 교육 및 자체교육·연찬 등을 강화하여 감면제도 조정에 따른 내용이 정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해당기관 등에도 개정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.

또한 지방세법,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,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여 기 감면받은자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감면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고 미제출 법인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특별관리 하는 등 사후관리 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.

바. 지방세 비리방지대책 지속 강구

지방세 취약요소에 대하여 집중 • 반복 점검으로 비리유발의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